



税務
法人

三友 SNTA

■ (Yeouido-dong, Shinsong Bldg.)
No.902, 67 Yeouinaru-ro, Yeongdeungpo-gu
Seoul, 150-923, Korea

■ TEL : +82-2-3215-1300

■ FAX : +82-2-761-6640

문서번호: SNTA1412-001

수신: 각회원사 담당자

발신: 세무법인 삼우 SNTA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 안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1.1.개정되어 시행된 법인지방소득세(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한 변경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폐사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 개편

(1)개편개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법인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되면서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surtax)에서 독자적으로 과세하도록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법률 제 12153 호, 2014.1.1.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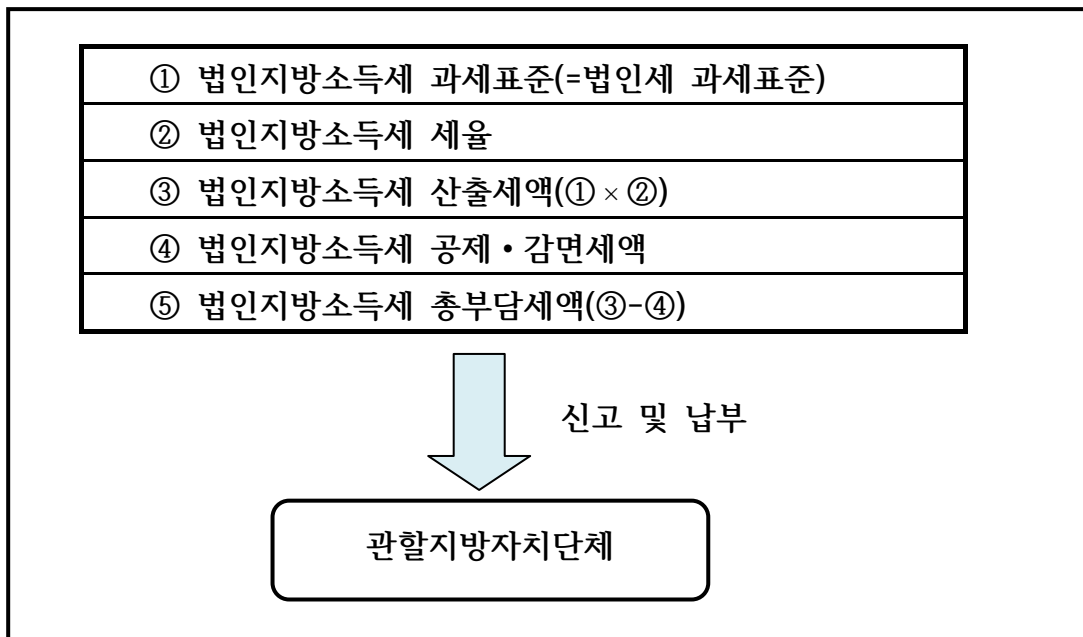
이에 따라, 종전에는 단순히 법인세총부담세액(=산출세액-각종 공제·감면세액+가산세등)의 10%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독자적인 과세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의 규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

준 및 세액 등을 계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법인지방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2014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시행시기(법률제 12153 호,부칙 제 2 조)

2014 년 1 월 1 일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4 년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부터 개편된 과세체계가 적용되므로 금번 12 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됩니다.

2)과세표준과 세율

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지방세법 제 103 조 19).

②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 103 조의 20).

<종전>		<변경>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부담세액	10%	2 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 억원 초과 200 억원 이하	200 만원 + (2 억초과금액 × 2%)
		200 억원 초과	3 억 9,800 만원+ (200 억초과금액 × 2.2%)

3)공제 · 감면세액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지방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남아 있는 각종 지방세 공제 · 감면 규정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4)신고 · 납부

구분	신고 기한
일반법인 확정신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 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 103 조의 23)
연결법인 확정신고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 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 103 조의 37)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포함)시 동시 (지방세법 제 103 조의 24)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결정·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 개월 이내 신고·납부
--------------------	--

5) 과세체계 개편 전후 주요 신고·납부 변경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과세체계 개편 전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신고·납부 기한	■ 확정신고 -일반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 개월 -연결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 개월	■ 확정신고 -개편전과 동일 -개편전과 동일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1 개월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법인세 신고+1 개월	■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
신고특례	■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 별도 신고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 제도 폐지)
신고서 첨부서류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신고시 첨부서류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	---

<참고>인터넷 지방세신고 · 납부 시스템(위택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유사한 행정자치부에서 운용중인 인터넷 지방세 신고 ·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위택스도 사전에 가입하여 놓으시는 것이 향후 전자신고 및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 도입

(1)변경내용

2015 년 1 월 1 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제 73 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주 1)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 103 조의 29).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42 호서식)에 계산서와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42 호의 2 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 100 조의 19).

종전에는 소득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으나, 2015 년부터는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인 법인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 합니다.

만약 현행처럼 국세인 법인세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사오니 각별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주 1: 특별징수란 국세의 원천징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대신 미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변경전후 사례비교

사례 1) 내국법인에서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비금융기관간 거래)

내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1000 원(비영업대금이자)을 지급하는 경우의 갑이 원천징수(특별징수포함)하여야 할 세액은?			
구 분	법인세	지방소득세	합계
<종전>	250 원(=1000 원 × 25%)	-	250 원
<변경>	250 원(=1000 원 × 25%)	25 원(=250 원 × 10%)	275 원
	법인세는 동일	지방소득세 추가징수	

사례 2) 금융기관(은행등)에서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은행)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정기예금이자로 1000 원을 지급하는 경우의 갑이 원천징수(특별징수포함)하여야 할 세액은?			
구 분	법인세	지방소득세	합계
<종전>	140 원(=1000 원 × 14%)	-	140 원
<변경>	140 원(=1000 원 × 14%)	14 원(=140 원 × 10%)	154 원
	법인세는 동일	지방소득세 추가징수	

상기의 사례 1)과 2)에서 갑이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을이 추후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고, 갑이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을이 추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이상-